

비오톱 평가등급 관리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비오톱등급 재조사 신청에 따른 전문가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 검토등 관련 절차를 거쳐 비오톱 평가등급 관리하여 행정신뢰성 확보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		
사업비 (당해년도)	36,340천원	(국비)	(시비)36,34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계획국	시설계획과	김진호 2133-8400	임미경 2133-8417	장재훈 2133-8420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35,840	(x-) 36,340	(x-) 500	(x-) 1
사무관리비	(x-) 25,840	(x-) 25,840	(x-) 0	(x-) 0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10,000	(x-) 10,500	(x-) 500	(x-) 5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사무관리비	○ 평가위원 수당	=	3,360천원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
	150,000원*14인*2회*0.8	
	○ 평가위원 안전검토	= 1,120천원
	50,000원*14인*2회*0.8	
	○ 비오톱 현장조사 비용	= 14,860천원
	743,000원*20일	
	○ 사무용잡비	= 800천원
	160,000원*5회	
	○ 인쇄비	= 3,000천원
	3,000,000원	
	○ 현장조사 피복비	= 2,700천원
	270,000원*5인*2회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시책추진비	= 10,500천원
	10,500,000원	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비오톱등급 조정신청 민원에 따른 전문가 현장조사와 평가위원회 운영
- 비오톱 등급 관리를 통한 행정신뢰성 확보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

□ 사업근거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7조제2항)
-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(제24조)
-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(제3조의3)
- 비오톱 관리 개선대책(행정2부시장 방침 제414호, 2015.12.14)
-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(2017.6.23)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8.1~2018.12
- 사업대상 : 비오톱 재조사 신청 필지 및 수시정비 필지
- 추진절차
 - 1차 현장조사(해당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등) → 2차 현장조사(시설계획과, 전문가) → 생태전문가 검토 →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검토(필요시 추가조사) → 지형도면 작성 및 변경고시

□ 추진경위

- 2005.02.21 도시생태현황도 정비(1차정비, 기간 2003.4~2005.2)
- 2010.03.25 도시생태현황도 정비(2차정비, 기간 2008.3~2010.3)
- 2015.06.03 도시생태현황도 정비(3차정비, 기간 2013.3~2015.6)
 -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(고시제2015-157호, 2015.6.18)

- 2016.01.28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 개정
- 2017.06.23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

□ 2018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6,340	
현장조사 및 유지관리	2018.01~2018.12	23,360	재조사신청접수, 전문가 현장조사
평가위원회 운영	2018.01~2018.12	12,980	현장조사자료작성, 평가위원회개최, 비오톱등급조정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: 2회(4월, 7월) ○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 고시(서울시고시제2015-157호)
2016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: 2회(3월, 8월) ○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 개정 : 2016.1.28 ○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 : 2회
2017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개최 : 1차(2월), 2차(9월), 3차(12월 예정) ○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: 2017.6.26

□ 향후 기대효과

- 비오톱1등급 토지 재조사 요청에 대한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 검토 등 관련 절차를 통한 민원해결
- 도시생태현황도 수시정비로 GIS DB 구축 및 수정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, 환경영향평가,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제시 및 생태적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4	(x-) 29,226	(x-) 0	(x-) 0	(x-) 29,226	(x-) 26,608	(x-) 0	(x-) 2,618
2015	(x-) 29,495	(x-) 0	(x-) 0	(x-) 29,495	(x-) 26,088	(x-) 0	(x-) 3,407
2016	(x-) 38,843	(x-) 0	(x-) 0	(x-) 38,843	(x-) 35,379	(x-) 0	(x-) 3,464